

【 2015.10.22(목) 강원일보 】

“도내년 SOC 사업예산 65억 사수하라”

국회 국토위 동서고속철·여주~원주 철도 각각 50억·15억 반영
여야 의원 현안 공감…예결위 최종 관문 통과 적극 방어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철도 사업의 내년도 기본설계용역 착수비로 각각 50억원, 15억원을 반영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등의 최종 관문이 남아 있어 최종 반영까지 적극적인 ‘방어’가 요구된다.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국회의원은 21일 열린 국토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도

최대 현안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국회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 통과다.

다음 달께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여주~원주 철도사업의 경우 ‘경제성’ 부문이 확보돼 내년 사업 착수가 예상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 반영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서고속화철도는 예결위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6일 계획된 2차 점검회의와 앞

으로 진행되는 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경제성 부문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게 과제다.

21일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 23억원, 동서고속도로 동홍천~내촌, 인제~양양 구간 부분개통을 위한 420억원(도공분 매칭 시 1,051억 원), 설악~힐링 휴양지구 조성 7억원,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51억원 등 도 주요 사업 예산이 신규·증액을 반영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예산 증액 위해 DMZ평화공원,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 관련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뇌물 혐의 공무원 항소 기각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나승길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A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형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08년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재일기자

춘천~속초 철도사업비 국비 반영

설계용역비 50억 편성

여주~원주 구간 15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속초 및 여주~원주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 기본설계 용역 착수비가 각각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별도 반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춘천~속초 철도사업비의 경우 국토부는 당초 정부편성안(총액 120억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편성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소위위원장인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이 정부를 설득, 도가 요구한 50억원이 기본설계용역 착수비로 반영됐다.

여주~원주 철도사업도 기본설계용역 착수비로 15억원이 편성됐다. 앞서 여주~원주 철도사업은 월곶~판교 전철사업 시행을 전제로 경제성분석(B/C) 수치가 1.04, 정책적분석(AHP) 수치는 0.584로 각각 나타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11월 영곶~판교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되면 여주~원주 전철 사업도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위는 이와 함께 평창동계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안(20억원) 보다 23억원 증액한 43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동홍천~내촌, 인제~양양 부분 개통을 위해 정부안(3263억 원)보다 420억원(도공 분담분 포

함 1051억원) 증액 반영했다.

여주~원주 부론 일반산단 진입도로 예산은 정부안 77억원 보다 51억원 증액해 128억원으로 편성됐다.

설악~힐링 휴양지구 조성 사업과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예산은 각각 7억원과 4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86억원 △홍천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 널미재 터널 5억 원 △홍천 에코힐링 레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 5억원 △횡성 국도 6호선 내용둔~옹둔삼거리 4차로 확·포장 사업 15억원 △홍천강 성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인제 남면 어론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도 30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때 ‘최대 3배’ 손해배상제 추진

정부, 건설 ‘安全대책’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 신설

‘工期지연’ 공사비 증가땐

안전관리비 증액 법제화

건설사고와 부실공사를 초래한 시공·감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안전관리만 전담하는 ‘안전 감리자’ 제도가 새로 생기고,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한 ‘작업 허가제’도 도입된다.

설계 변경 또는 공기 지역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면 안전관리비도 함께 증액된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건설

현장 안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 관련기사 3면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책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손해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에선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 도입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건설안전을 위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설계변경 또는 공기지역에 따른 공사비 증가 시 반드시 안전관리비도 증액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공단계에 머물렀던 안전관리 업무는 설계, 발주단계로 확장된다. 설계단계에서 시

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제거하는 ‘안전설계(Design for Safety)’가 의무화되고, 종합심사나찰제를 통해 발주단계에서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걸러낸다. 시공단계에선 작업자와 감리자의 책임강화를 위한 작업허가제, 작업실명제가 도입된다.

이 외에도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를 평가·공개하는 ‘안전관리 역량평가’가 내년부터 시범실시된다.

건설현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감리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만 전담하는 안전감리자를 따로 선임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 주택법으로 조개져 있는 감리제도는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태형기자 kth@▶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 건설현장 안전사고 ‘최대 3배’ 손해배상제 추진

최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가 설치·사용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선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주기를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사를 수행하면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철강재 등의 건설자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가설 구조물을 건진법상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가낙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건설공사에

대해 특별관리대상 건설현장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고용부와 공동으로 불시에 건설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통해 산업현장의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전 구역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 시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벌칙을 높이는 등 원정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총리는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의 안전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취약 분야”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 2015.10.22(목) 건설경제 】

A건설 B상무는 경쟁업체 임원들과 정기모임을 하면서 이미 외부에 공개돼 있는 가격정보를 교환했다. 이후 B상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업체에 대해 담합 조사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과징금 감면 혜택 등을 받기 위해 가격을 합의했다고 담합을 부풀려 자진신고했다. 지금까지 공정위와 경쟁업체는 B상무의 과장된 자진신고로 불필요한 조사 부담을 지는데 그쳤지만 앞으로 공정위는 B상무를 심판정에 출석시켜 가격 합의 당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고 허위·과장 신고가 드러날 경우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정위 C조사관은 D건설 E부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과정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 입회 요청을 거부했다. 그동안 E부장은 공정위의 조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E부장은 C조사관에게 현장조사과정 확인서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가 현장조사 이후 전화로 조사대상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해피콜’ 때 C조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될 경우 C조사관은 폐널티를 받게 된다.

담합 리니언시 노린 ‘꼼수 신고’ 못한다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가담자 심판정 출석 의무화… 공무원 위압적 조사 땐 ‘폐널티’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개혁

담합사실에 대한 허위·과장된 자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의 심판정 출석이 의무화된다.

또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위압적인 언행을 할 경우 해당 조사공무원은 폐널티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 ‘사건처리 3.0’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우선 공정위는 담합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심의할 때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이 심판정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일부 기업들은 과징금 감면 혜택, 조사 부담 등을 이유로 담합을 허위 또는 과장해 자진신고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법위반 사실이 없는 경쟁업체들에 대한 조사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자진신고한 기업의 임직원을 심판정에 출석시켜 담합사실을 면밀히 심의하고 허위·과장 신청일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 등을 기재하고 조사공문상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선 조사대상업체가 조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위압적인 조사태도, 일일보고 누락 등 내부 통제 규정을 위반한 조사공무원에 대해 ‘공정위 감사·감찰 조치 기준’에 따라 폐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조사대상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와 조사자료 목록 등을 조사대상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이들 내용과 관련된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경남기자 knp@

【 2015.10.22(목) 건설경제 】

정무委, 甲질 제동 '하도급법 개정안' 심의

다음달 3일부터 사흘동안 법안심사소위 개최 예정
하도급 대금 지급일 단축·부당 단가인하 금지 등 주목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른바 '대기업 갑질'에 제동을 걸 '하도급법 개정안' 심의에 시동을 건다.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을 현행 기준보다 단축하는 동시에 하도급 입찰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 등 건설 산업분야에 직결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심의 시기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이후인 11월이 될 예정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2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소위를 열고,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11월3~5일 사흘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된 법안심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9일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를 마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11월17~23 일까지 진행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10월이 예산 심의를 위한 정기국회였다면, 11월은 법안심사에 집중하는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는 게 정무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11월에 논의될 주요 법안에는 20여건에 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이 꼽히고 있다.

주요 개정안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방안

(강창일 의원) △하도급계약의 예정가격과 낙찰자 공개 의무화(이현재 의원) △부당단가 인하 금지(박수현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시행(이상민 의원)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및 부당 위탁 취소 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제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유형에 직접공사비 항목을 통합하여 나 구역 등을 축소·누락하고 재입찰하는 행위를 추가(김기준 의원) △서면실태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로 상향(김상훈 의원) 등이 있다.

다만 입찰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고, 부당 위탁취소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귀책사유를 판단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한 데다 현행 보증기 관 약관에 '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사고'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지

급하지 않고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최종안 마련에 진통이 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송의 3심 제도입 방안과 과징금 감경 범위를 50% 이내로 제한하고, 대기업 계열회사의 주식 보유비율 요건을 1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대부업상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을 담은 '대부업법', 부실기업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한창이지만, 다음달에는 법률 개정안 심의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상정안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형웅기자 je8day@

아하! 그렇구나

입찰공고와 다른 내용의 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있을까?

Q 관급공사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고, 낙찰자는 아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입찰시행자가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낙찰자와 입찰시행자 사이에 예약이 성립되고, 낙찰자는 입찰시행자를 상대로 본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시행자는 입찰공고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입찰공고의 내용을 무시하고 입찰공고의 내용보다 낙찰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계약에 편입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가?

A 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입찰시행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찰공고와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정하여진 것이므로 입찰시행자가 그 내용이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이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 절차에서 계약은 낙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성립하지만, 낙찰자는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낙찰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찰공고의 내용에 부합되는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낙찰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찰공고의 내용에 부합되는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입찰공고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